

만촌자이르네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만촌자이르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해 **건본주택 관리를 사전방문예약제(http://mc-xirn.com)로 대체하여 운영합니다.**

- 만촌자이르네 홈페이지(http://mc-xirn.com)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촌자이르네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건본주택 방문 안내

-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사전서류 제출 및 자격검증, 정당계약시 방문예약을 통해 방문이 가능합니다.(당첨자 또는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당첨자 사전서류 제출 및 정당계약은 만촌자이르네 홈페이지(http://mc-xirn.com) 방문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건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사전예약 접수일정, 시간대별 방문인원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

● 건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 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는 경우 포함)

-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자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측정 결과 37.5℃가 넘을 경우

- 기타 건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건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본주택 관리,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 상담전화(☎1533-5655),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및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 등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4.29.(금)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10년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간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64호(2017.09.20.)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21.04.29.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접수일 구분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로서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등을 포함) 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매매대금 완납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 또는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필요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은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O	O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청약접수 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하층을 희망하여 청약 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다만, 아래 대상자 사이 경쟁이 발생할 경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적은 경우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mc-xirn.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임으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64호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대구광역시 1년 미만/경북거주자)	대구광역시 / 경북거주자			
일정	05월 09일(월)	05월 10일(화)	05월 11일(수)	05월 17일(화)	05월 20일(금) ~ 05월 24일(화)	05월 30일(월) ~ 06월 02일(목)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사전예약 견본주택 방문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 모바일 : 스마트폰앱				만촌자이르네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 ☎ 1533-5655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다만,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신청 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어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 - 19808호(2022. 04. 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883-3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2층, 지상 최고 26층 6개동 아파트 총 60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2000273	01	077.6825	77	77.6825	20.8437	98.5262	43.5772	142.1034	40.5204	124	3
		02	084.9918A	84A	84.9918	22.5307	107.5225	47.6774	155.1999	44.3330	272	5
		03	084.8723B	84B	84.8723	23.1674	108.0397	47.6103	155.6500	44.2707	211	3
합 계											607	1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동 (라인)	층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 (60%)
					대지비	건축비	소계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2.09.01.	입주지정일
77	124	101동 1호라인	1층	3	354,053,600	577,666,400	931,720,000	30,000,000	63,172,000	279,516,000	559,032,000
		102동 1호라인	2층	8	354,053,600	587,966,400	942,020,000	30,000,000	64,202,000	282,606,000	565,212,000
		103동 1호라인	3층	8	354,053,600	608,666,400	962,720,000	30,000,000	66,272,000	288,816,000	577,632,000
		104동 1호라인	4층	8	354,053,600	618,966,400	973,020,000	30,000,000	67,302,000	291,906,000	583,812,000
		105동 1호, 2호라인	5~9층	40	354,053,600	639,666,400	993,720,000	30,000,000	69,372,000	298,116,000	596,232,000
		106동 1호, 2호라인	10~18층	57	354,053,600	650,066,400	1,004,120,000	30,000,000	70,412,000	301,236,000	602,472,000
84A	272	102동 4호, 5호, 6호라인	1층	5	407,907,200	665,532,800	1,073,440,000	30,000,000	77,344,000	322,032,000	644,064,000
		103동 4호, 5호, 6호라인	2층	10	407,907,200	677,332,800	1,085,240,000	30,000,000	78,524,000	325,572,000	651,144,000
		104동 4호, 5호라인	3층	12	407,907,200	701,132,800	1,109,040,000	30,000,000	80,904,000	332,712,000	665,424,000
		105동 5호, 6호라인	4층	12	407,907,200	713,032,800	1,120,940,000	30,000,000	82,094,000	336,282,000	672,564,000
		106동 5호, 6호라인	5~9층	60	407,907,200	736,732,800	1,144,640,000	30,000,000	84,464,000	343,392,000	686,784,000
			10~26층	173	407,907,200	748,632,800	1,156,540,000	30,000,000	85,654,000	346,962,000	693,924,000
84B	211	101동 2호, 3호라인	1층	3	405,642,400	661,837,600	1,067,480,000	30,000,000	76,748,000	320,244,000	640,488,000
		102동 2호, 3호라인	2층	10	405,642,400	673,637,600	1,079,280,000	30,000,000	77,928,000	323,784,000	647,568,000
		103동 2호, 3호라인	3층	12	405,642,400	697,337,600	1,102,980,000	30,000,000	80,298,000	330,894,000	661,788,000
		104동 2호, 3호라인	4층	12	405,642,400	709,137,600	1,114,780,000	30,000,000	81,478,000	334,434,000	668,868,000
		105동 3호, 4호라인	5~9층	60	405,642,400	732,737,600	1,138,380,000	30,000,000	83,838,000	341,514,000	683,028,000
		106동 3호, 4호라인	10~26층	114	405,642,400	744,537,600	1,150,180,000	30,000,000	85,018,000	345,054,000	690,108,000

※ 상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본 아파트는 분양대금의 30%(중도금)에 한해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시 대출취급기관 등에 의거 분양대금의 10%(1차, 2차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약정한 납부 기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상의 연체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77.6825	084.9918A	084.8723B
견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77	84A	8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선시공 후분양 상품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선택품목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에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만촌자이르네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특별공급 제외 주택)에 의거하여 특별공급 배정 세대는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p>신청 자격</p>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p> <p>※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p>청약 관련 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 요건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예금 가입자 주택규모 변경(모집공고 전일까지 큰 주택규모 예치금액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저축 가입자 청약예금으로 변경(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신청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②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발생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면적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100%) 적용, 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④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미만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충족되지 않는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분은 2순위 청약도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64호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구 분(전용면적)	그 밖의 광역시(대구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북도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중복 청약 접수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음.
- 접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자란」의 인자란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 (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 성인 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첨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IV 청약신청 방법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2022.05.09.(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청약홈) -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1순위(기타지역)	2022.05.10.(화) 09:00~17:30		
	2순위	2022.05.11.(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다만,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신청 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어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가정현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 style="text-align: center;">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p>·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p> <p>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p>·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p>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해야 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당첨자 서류검수 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등·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일반공급 당첨자)	계약체결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05.17.(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05.20.(금)~2022.05.24.(화) • 장소 :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 ☎ 1533-56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05.30.(월)~2022.06.02.(목) • 장소 :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 ☎ 1533-5655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등·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등·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예비입주자의 서류검수 일정 및 동·호 추첨 일정은 추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모바일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숲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 2022.05.17.(화) ~ 2022.05.26.(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대상	-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문자서비스	제공일시	- 2022.05.17.(화) 오전 08시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서류제출 및 동·호수 배정, 계약 등) 일정은 홈페이지(http://mc-xirn.com) 게시 또는 별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여부 및 부적격소명 등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물량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후순위의 예비입주자의 가점 초과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후순위의 예비입주자의 가점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http://mc-xirn.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서류제출 방식 및 일정, 운영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반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미접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 내 필히 서류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제출 서류[표1]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로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경상북도)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가점제 당첨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생년월일로부터 현재까지로 기간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기간 설정하여 발급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 공동(개별)주택가격확인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VI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 입금 후 정당계약일에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계 약 일 정	계 약 장 소
정당당첨자 계약체결	2022.05.30.(월) ~ 2020.06.02.(목) 4일간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 (☎ 1533-5655)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시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자격검증서류	본인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서류검수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포함)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제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해야 함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 본인 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가능)
	○		계약금 입금증	본인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증 (계약시 견본주택에서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수납 일체 불가함)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각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관리계좌 (1차 계약금)	하나은행	401-910212-48105	아시아신탁(주)
분양대금 관리계좌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자별 가상계좌 부여	

- 상기 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로서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및 플러스 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2차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은 계약체결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계약서에 납부계좌, 납부금액, 납부일정 별도 안내)로 납부하여야 하며(모계좌로 이체 관리됨),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은행 계좌 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견본주택 현금 수납 불가)
- 상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착오납입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로 확인한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함)로 선정을 제한함)
 - ①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②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세대당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다만,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음)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후순위의 예비입주자의 가점 초과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후순위의 예비입주자의 가점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 등에 의거 분양대금의 10%(1차, 2차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대출취급기관 선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 아닌 그 외 지역의 대출취급기관(본점 및 지점 등)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거리에 위치할 수 있어 중도금 대출(권리의무승계 계약서상 양도인 및 양수인의 대출취급기관 방문 관련 등)과 관련하여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시 이자 후불제 조건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3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대출 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대출 개시일부터 변경된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 방식 포함) 및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등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중단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금을 자납 또는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아 납부하는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대출 납부이자, 수수료, 인지대 등의 비용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 정책, 대출 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분양사무소(건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사전점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추후 통보)
- 사전방문 확인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 확인

■ 입주예정일 : 2023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제 입주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 가능한 날을 통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지하주차장 등 (단,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 시설물임)

■ 주차장 출입 가능한 높이 제한 : 지하 1층 진입 및 주행로 유효높이는 2.7m, 지하 2층의 주행로 높이는 2.3m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Ⅶ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등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5%)	중도금(5%)	잔금(90%)	비고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입주지정일	
77	28,000,000	1,400,000	1,400,000	25,200,000	
84A	30,000,000	1,500,000	1,500,000	27,000,000	
84B	30,000,000	1,500,000	1,500,000	27,000,000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공정확인서상(2022.04.05.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실행 공정률 약 73.35% 공정진행으로 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며, 비확장 세대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전시공 후분양 상품으로 발코니 확장 시공이 완료되어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제시된 선택형 외에 개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직접 외기에 면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외벽은 단열재의 추가 설치 시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외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형태, 세대 간 마감 및 가구, 인테리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외관구성 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홍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단열재의 추가 설치 등의 사유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 (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할 예정이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건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 세대를 전시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금액	계약금(5%)	중도금(5%)	잔금(90%)	비고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입주지정일	
현관중문	77, 84A, 84B	1,600,000	80,000	80,000	1,440,000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침실3 붙박이장	77, 84A, 84B	1,000,000	50,000	50,000	900,000	-
식기세척기	77, 84A, 84B	900,000	45,000	45,000	810,000	DUB22SB2, LG전자
광파오븐	77, 84A, 84B	800,000	40,000	40,000	720,000	MZ385EBT, LG전자
플러스 옵션 계		4,300,000	215,000	215,000	3,870,000	

※ 현관중문은 본 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후분양에 따른 주방가구 선발주로 인하여 식기세척기 및 광파오븐 미선택 시에는 별도의 마감 없이 시공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공정을 선시공 후분양 특성상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후 해당 계약의 변경/취소가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은 후분양으로 시공되어 현장 공정상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계약체결 전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5-848192	아시아신탁(주)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과 잔금은 계약체결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계약서에 납부계좌, 납부금액, 납부일정 별도 안내)로 납부하여야 하며(모계좌로 이체 관리됨),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은행 계좌 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견본주택 현금 수납 불가)
- 상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착오납입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기본제공 품목 안내

- ※ 타입 구분없이 시스템에어컨은 4대(거실, 침실1,침실2,침실3), 시스클라인은 2대(거실, 주방) 기본제공되며 설치 위치, 대수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시스템에어컨, 시스클라인은 설치위치 변경, 추가설치 등이 불가하오니 확인하시어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 시스템에어컨은 주택형별 면적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2) 시스클라인(천장형 공기청정 시스템)

- 시스클라인은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 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은 천장에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쿨러, 감지기등)을 고려하여 실시공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클라인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선택 시 거실 컨트롤러 1대로 거실 및 주방 통합제어 가능하며, 거실컨트롤러는 기본 제공 되는 품목입니다.

단지 및 단위세대 등 유의사항

공통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과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각의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 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 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또한,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의거하여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대지지분의 감소는 별도의 분양대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을 일부 침해당할 수 있으며, 배치도 상 층수 혼선이 있을 경우 동·호수 배치가 우선함. 계약자는 동·호수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 입면 계획상 설치된 장식물 등으로 인해 일부 세대는 음영 발생 등 일조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 재료가 상이하오니 계약 전 필히 세대입면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입면 재료에 따라 창호 상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옥외 조경공간은 모든 입주민을 위한 공동사용 공간입니다. • 옥외경관조명, 조경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관리비 부과기준 등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주택과 비주거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관리업체(관리사무소, 입주관리업체 등)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하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배기 루버 설치로 비상 발전기 운전 때 소음,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라 발생 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인조석, 엔지니어드스톤 등) 및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등급 VII-0.240g입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11호)을 준수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은 국가 공인 표준시험동에서 시험한 완충재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등급이므로, 추후 실제 세대의 성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계획에 따라 건물 상호 간섭, 지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조망,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이에 따른 부담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확장을 고려한 평면설계로 견본주택과 설계도, 세대별 유닛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세대 중 인접 동 및 인접 단지에 의한 시각적 간섭 발생이 있음을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소음발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램프 인접 주동은 하부에 위치한 세대 내에서 램프 지붕이 보일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램프 이용에 따른 소음,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과 입면의 장식 등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붕 재료 및 형태/구조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 (DA 등의) 설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도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승인 전·후 최종 인·허가 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은 2021년 8월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및 설계변경예정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광장, 공원, 녹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장은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되는 아파트입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뿔칠, 페인트로 마감되며, 주동형태에 따라 석재와 뿔칠, 페인트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현장여건,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관청에서 본 아파트 단지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실시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과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변경(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공공보행통로(단지내 보도) 및 옥외 엘리베이터는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른 시설로 향후 임의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통행을 차단할 수 없으며, 시설관리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고 본 사항에 대하여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인·허가 관청에 공증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인근에는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의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예정으로 이에 따라 소음 및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내 및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도로 선형,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면한 인접 대지 레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의 종류, 노출 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옹벽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 구조상 보강시설물에 따른 점용비용이 발생 가능합니다. • 당해 지구 및 인근 사업지구 기반시설의 위치, 혐오시설 유무,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의 환경에 대해서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당 사업지구 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변경 절차를 진행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국가시책 등으로 계획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및 시설물은 실시계획인가 및 관련 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인·허가를 득한 사항에 적합하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 당 사업지구 주변 토지에 개발계획은 당 사업자와 무관하며, 개별 건축허가, 개발행위 등의 진행 사항은 개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 후 매각/기부채납하는 시설부지의 개발 및 시설설립 등의 일정은 관련 기관에서 확정하며,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북측에는 15M도로, 서측에는 14M도로, 동측에는 18M도로, 남측에는 10M도로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서측에 도시공원이 계획되어있고, 단지 남측 인근에 광역시도 청수로가 인접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서측 영남공고와 인접한 도로는 영남공고 및 수성구청과 도로선형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 도로선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옹벽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초등학교는 본 아파트 인근 대청초등학교에 배정 가능하고, 중학교의 경우 2학교군 분산배정될 예정입니다. • 학생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시행위탁자는 입주자 의견취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계약체결 시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 시 수성구청과 10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단, 대구광역시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가능)
단지	동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으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쓰레기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103동, 104동 후면 조경시설에는 부대복리시설, 상가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시각적 간섭 및 실외기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 ELEV 승강로 측면에는 소방 헬륨용 D/A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바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2동 1호 세대 주방후면에는 D/A가 설치되어 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바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4동, 105동 1호 세대 주방후면에는 D/A가 설치되어 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바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5동 4호세대 전면 우측에는 D/A가 설치되어 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바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6동 1호세대 주방후면에는 D/A가 설치되어 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바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6동 6호세대 2층 전면 녹지에는 정화조 청소용 연결구가 설치되어 간헐적 청소시 소음 및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6동 6호세대 1층 후면에는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D/A에 의한 인접 세대(실)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 옥상에 B.I.설치를 위한 옥상구조물과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상층부 세대에 야간 빛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 기타 급배기용 D.A 및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한 탐라이트 등 외부시설은 단지배치도를 참조 바랍니다.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분양 후 D.A 등의 기타 외부시설의 위치, 크기,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조경 및 동출입구 등 각종 구조물에 의해 조망 및 채광에 불리한 타입이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동측에 위치한 비상차량출입구에 문주 구조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구조물에 의해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 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시설 주변에 설치되어 이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레이아웃 위치, 마감재료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약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위치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피뢰침, 통신사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 제한이 불가합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상 설치가 불가합니다.(단차구간 안전난간대 제외)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용 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도, 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전소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p>외관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함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단지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낙수 등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벽 로고(BI) 설치 개수는 104동 1개소, 105동 1개소로 설치 예정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빔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 및 디자인에 따라 석재 및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p>공용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지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클럽, GX룸, 로비라운지, 작은도서관 등) 및 부속동(아너스클럽 등), 일부 공용부 등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중 일부는 지하층에 설치되나 자연채광 일부 및 강제환기가 가능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난방 급탕을 위한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공용설비 및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본 주택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선시공 후분양 상품으로 단지 및 옥외 엘리베이터의 제조사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제조사, 제품사양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AMR)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휨룸, DA)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휨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 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 102동, 103동, 106동 옥상층 및 화단등 일부구간,지하주차장, 동통신실
<p>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총 826대(아파트 지하 744대, 지상 64대, 근린생활시설 지하 18대 - 경차 및 장애인 주차, 전기차충전 주차구획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의 경우 데크형 주차장으로 지하1층 주차장에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지하 2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동 지하층 및 옥탑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급속4, 완속7, 기타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택배차량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소는 지하주차장 지하1층 동출입구 인근에 배치되어 있으며, 동별로 설치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p>근린생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인근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인근 지하1층 주차장 중 전용주차장(18대/장애인주차 1대 포함)을 사용합니다.

	<p>평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 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되나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p>발코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홍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 시스템 및 시스템에어컨 시공으로 인하여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옥외 탈출형 피난시설을 통해 인접세대(하부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옥외 탈출형 피난시설 설치세대는 비상시 옥외 탈출형 피난시설 사용을 위해 항상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옥외 탈출형 피난시설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p>단위 세대</p>	<p>창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 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아파트 외부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선시공 후분양 상품으로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으로 시공되며 계약자는 마감재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제조사, 제품사양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설치로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창호 높이 및 천장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p>옥외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 요구 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집합건물법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외부공간은 공용공간으로 통기배관 및 연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권,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공간은 공용공간으로 불법 건축물 설치 시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부공간 바닥은 무근콘크리트 마감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레벨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근콘크리트는 방수층 보호 목적이므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공간 하부에 단열재가 설치됨에 따라 외부공간 레벨은 실내측 레벨보다 높게 시공됩니다. • 외부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 통기관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p>가구 및 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 싱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고장 형태는 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주방은 전기쿡탑(하이브리드) 기본적으로 인해 가스 공급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가스쿡탑 설치가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시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본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공사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포셀린 타일은 설치시 일부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 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기기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됩니다 • 욕실, 발코니 바닥 배수구, 환기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옥외 탈출형 피난시설, 보일러실(다용도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가스배관은 보일러 사용을 위해 다용도실에만 설치가 되며, 주방에는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건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클라인,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건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색온도 4000K 적용되며, 사이버 건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 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 온도와 다를 수 있음) • 사이버 건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5항 및 「사이버 건본주택 운용기준」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건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건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사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본 공사시에도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또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의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저가주택등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등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등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적용함.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요건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크게 변경 시 별도의 제한기간 없이 수시 변경가능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작게 변경 불필요(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이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의 주택에 청약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등을 조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고효율 난방,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사용
	절수형 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 2항 별표2에 따른 절수형 기기 설치
	실별 온도 조절장치(사목)	적용	실별 실내 온도조절장치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변압기는 고효율변압기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역율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형광등기구는 “효율관리 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품 사용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 소비율 1등급 제품 또는 표준 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실별(거실,침실,주방)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한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신담엔지니어링	국제엔지니어링(주)	(주)안세기술
감리금액	2,074,095,100원	485,132,750원	366,850,000원	149,930,000원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위탁자	(주)경주건설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8-13 수서타워 619호 (수서동)	110111-3064617
시행수탁자	아시아신타(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케이티엔지타워 13층동(대치동)	110111-3543801
시공회사	자이에스앤디(주)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0층 (충무로3가)	110111-1934557
	지에스건설(주)	서울시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	110111-0002694

■ 본 주택은 후분양상품으로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함.

보증기간	연대보증건설사	법인등록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자이에스앤디(주)	110111-1934557
	지에스건설(주)	110111-0002694

※ 보증내용 : 상기 연대보증사는 시공사가 부득이한 사정(부도, 폐업, 파업에 의한 직장폐쇄, 고의에 의한 공사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될 경우 일체의 공사를 승계하여 사용승인을 완료함.

■ 관리형 토지신탁

-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경주건설, 시행수탁자 아시아신탁(주) 및 시공사 자이에스앤디(주), 지에스건설(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함.
- ※ 본 공고에서 시행수탁자 아시아신탁(주)는 분양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분양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하며, 본 공고에 따른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경주건설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아시아신탁(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경주건설과 시행수탁자 아시아신탁(주)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 및 매도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경주건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귀속)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경주건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
- ※ 본 분양물건은 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신탁사인 아시아신탁(주)를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경주건설과 시공사인 자이에스앤디(주), 지에스건설(주)에게 있음.
-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본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 만촌자이르네 홈페이지 : <http://mc-xirn.com>
- 견본주택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 현장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883-38번지 일원
- 분양문의 : 1533-5655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사전예약제로 견본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 정보를 안내하오니 고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 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광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광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2022.04.29.(금)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2022.05.09.(월)
	1순위 (기타지역)	2022.05.10.(화)
	2순위	2022.05.11.(수)
당첨자발표		2022.05.17.(화)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2022.05.20.(금) ~ 2022.05.24.(화) 5일간
계약체결		2022.05.30.(월) ~ 2022.06.02.(목) 4일간

